

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대상 투자신탁 : 하이 아시아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1호[주식]

2. 변경 시행일 : 2010년 11월 12일

3. 변경사유

- 가.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 : “김규훈”에서 “신동혁”으로 변경
- 나.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다. 기준일 현재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(갱신)

4. 변경 주요내용

가. 집합투자규약

| 구분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45조 (투자신탁의 해지) | ① (생략) 1. 내지 2. (생략) 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4. <신설> ② 내지 ③ (생략)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___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| ① (현행과 같음) 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 3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___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|
| 부칙 | <신설> |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 |

나. 투자설명서

| 구분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
| 갱신 | - | - 재무정보 -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-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- 집합투자업자의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-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<추가> | 2010-11-12 |

| | | |
|---|---|--|
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탁계약서 변경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) - 책임투자운용인력 변경("김규훈"에서 "신동혁"으로 변경) |
|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책임투자운용인력 | 김규훈 | 신동혁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 해지(해산)의 위험 | 투자신탁이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, 투자회사가 _____ 있습니다. |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 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, 투자회사가 _____ 있습니다.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-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|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, 채권평가회사,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_____ 있습니다. |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, 채권평가회사,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오류가 10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_____ 있습니다. |
| 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 |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|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 공시 | <추가> |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)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|

끝.